

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·회수 업무처리지침

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-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원증명수단 도입에 따라 신원확인
신분증 사본 보관 업무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
통일성을 높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신분에 관한 증명서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
모바일 신분증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신분증 사본 첨부
에 갈음하여 신분확인서를 공탁기록에 철하도록 함(안 제3호 후단)

3.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 및 회수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·회수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·회수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그 신분에 관한 증명서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확인서(「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」 별지 제20호 양식)를 해당 공탁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3. 공탁관의 신분확인 시 유의사항 공탁관이 규칙 제37조제3항제1호 에 따라 공탁금의 출급·회수청구 를 받은 때에는 신분에 관한 증명 서의 사진, 주소, 주민등록번호 등 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철저 히 확인하여야 하고, 그 신분에 관 한 증명서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 에 철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다만 그 신분에 관한 증명서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 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 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 분확인서(「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」 별지 제20호 양식)를 해당 공탁기록에 철하여야 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

연락처

(02) 3480-1877